

#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3. .

발의자 : 정현미, 김지훈(국), 한송연,  
원주영, 한근수, 이수련,  
박은경, 전해연, 이진환,  
이경숙, 김지훈(민)

### 1. 제안 이유

남양주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 남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제4조)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6조)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안 제8조~제10조)
-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련법령 :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2.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3.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4.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시민사회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의식 제고 방안
3. 공익활동단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남양주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남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3.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4.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 육성
5.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등에 관한 상담·컨설팅
6.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단체 육성 지원 사업
7. 공익활동단체 등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9. 공익활동 주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

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의 경우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에 따라 비용발생 여부 결정되며, 제8조(남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제11조(재정지원)의 경우 임의규정으로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2호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우리시는 이미 약 30개 부서에서 240여개(자체사업)의 공익활동 보조사업(민간보조)을 운영하고 있어,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이 개별단체 예산지원보다 정보제공, 홍보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발생 될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4. 작성자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곽용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